

2024년도 제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4. 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하병현(분과위원장 대행), 심동섭, 최진원,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3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73건(안건번호 제2024-26376호~2784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6376호~26378호(순번 1번~3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6379호~26408호(순번 4번~3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6409호~26450호(순번 34번~75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6451호~27848호(순번 76번~1473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동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64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OOO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로 총 5건임.

(순번 3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OOO 블로그에 'OOO, OO OO', 'OOO OO, OO, OO'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2024. 4. 1. 기준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재된 점을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는 비밀댓글을 통하여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3번의 사안은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 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3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OOOO', 'OOOO'과 OOO 카페 'OOOO'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49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4번~33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번~3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4번~3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번~7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OOO OOOOOOO', 'OO' 등의 쇼핑 포털에서 'OO OOO' 혹은 'OOOOO'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75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4번~75번은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34번~7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A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안의 앱은 처음부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사용자가 설치해야함.
- B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인 'OOOOO', 'OOOOOO'는 똑같이 'OO OOO'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C 위원: 국내 드라마 등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국내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보기 메뉴에서 전 세계 영화, 영상저작물을 'OOOO' 처럼 시청할 수 있음.
- C 위원: 다운로드가 가능한가.
- 박현주 전문위원: 다운로드하는 불가하고,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4번~7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34번~75번의 심의대상 계

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6번~147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2,51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로기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로기완'의 전체 분량을 2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3. 1.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임.

(드라마 '로얄 로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92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로얄 로더'를 3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으로, 총 12부 중 2편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4. 2. 28.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임.

(SW '한컴오피스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49번은 웹하드에서 SW '한컴오피스 2024'를 2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12. 출시된 SW로 '한글과 컴퓨터' 사이트 등에서 99,000원에 판매 중인 SW임. 조사 자료를 보면 암호화된 파일이 업로드되어, 사용자 쪽에서 다운로드 후 복호화를 해야하지만, 복호화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아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6번~147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26376호~26378호(순번 1번~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6379호~26408호(순번 4번~3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6409호~26450호(순번 34번~75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6451호~27848호(순번 76번~147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1.

분과위원장 대행	하병현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한승원